

保險에 있어서의 危險에 關한 研究

濟州大學 教授 夫 鍾 哲

目 次

- I. 緒 論
- II. 危險理論에 있어서의 問題
- III. 契約에 있어서의 危險
- IV. 經營에 있어서의 危險
- V. 危險과 費用
- VI. 結 論

I. 緒 論

保險의 本質은 이것을 經濟學的으로 보는 限, 資金交流의 機構로서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元來 保險의 本質에 있어서의 學者들의 主張이 반드시 一致하지는 못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危險 또는 損害의 概念에서 明白히 할려는 생각이 오늘날까지 극히 有力 하였다는 것 만은 確實히 言及 할 수 있는 것이다.

保險의 危險에 關한 經濟學的의 考察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Willet, A.의 著書「危險과 保險에 關한 經濟理論」을 言할 수 있다. 이것에 依하면, 사람의 生命, 健康, 財產, 收入, 모든것이 災厄에 直面하고 있는 것이다. 人間들이 거기에 對한 方策은 極히 無力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損失의 發生에 關한 不確實의 程度가 危險이라고 하고 있다. 即, 危險은 主觀的인 不確實性의 客觀的인 相關이고 災害의 發生에 關한 客觀的 不確實性을 意味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損失의 填補가 保險이라고 하고 있다. 即, 그에 依하면 資本의 不確實한 損失을 填補하기 爲하여, 資金의 蓄積을 하는 社會的인 機構가 保險이지만 그것은 多數의 個人的 危險을, 一個人 또는 多數人으로 構成된 團體에 轉嫁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保險은 生命이나 財產이 將來 不確實에 當面한다는 危險의 存在에 따라 成立하는 것이다. 同種의 危險下에 있는 사람은 多數이지만 그 中에서 몇 사람이 現實에 損害를 입느냐는 것

은 不明한 것이다. 단지 一定期間에 損害를 입는 사람의 數는 經驗的으로 그것을 豫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財産 또는 生命에 關하여 同種의 危險에 當面한 多數의 經濟單位가 모여 하나의 團體를 構成하고 그들에게 생기는 損害를, 團體의 各員이 分擔하는 것이 保險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에 따르면 여기에 危險이라고 하는 것은 經濟上의 損害를 입는다는 可能性을 意味하는 것이다. 損害의 分擔이 現實的으로 損害의 發生을 보았을 때 그 結果를 處置하는 關係를 말하고, 危險의 轉嫁는 그 損害發生 前에 處理하는 關係를 意味한다는 點에 注意한다면 保險의 本質을 危險 또는 損害에서 찾으려는 思考는 元來 같은 것을 取扱한 것에 不過한 것이다. 이러한 思考는 特히 損害와 危險의 어느 쪽에 強調을 하느냐에 따라 學者들은 그것을 損害分擔說, 또는 危險轉嫁說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¹⁾

이렇게 保險을 損害의 分擔이나 危險의 轉嫁로서 보지 않고 欲求의 充足이나 欲望의 滿足으로 보는 사람들도 損害나 危險의 觀念이 潛在하여 그것이 多少를 막론하고 保險의 本質을 形成하는 것이다.

故로 危險은 保險에 있어서 결코 不可缺이나,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언제나 損害와 結付되는 것이나.

나는 保險의 本質을 資金의 交流機構에 求하지만 그러한 경우 危險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되느냐, 이것을 本章에서 取扱하려는 問題인 것이다.

II. 危險理論에 있어서의 問題

周知한 바와 같이 「危險없으면 保險없다」는 말은 古來 保險의 鐵則으로 되어 있다. 實로 危險이라는 것은 保險成立의 前提가 됨과 同時에 保險契約의 內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契約의 成立과 存續을 爲한 要件으로 되어 왔다. 이러한 危險의 概念에 對해서도 學者들의 見解는 반드시 歸一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리겔(Riegel, R.)은 保險을 個人的 不確定한 危險을 集團에 轉嫁하고 그것을 確定시키는 社會的構造(device)라 하였다.²⁾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危險은 被保險자가 所有하고 있는 財産 또는 利益 또는 將來 가질 수 있는 利益 또는 利潤의 喪失을 意味하는 것이다. 故로 그에 있어서는 危險은 損害의 概念에 結付시켜 損害가 없는데 危險 없고 故로 保險은 成立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브레이(Mowbray, A.H.)는 危險을 社會에 대한 코스트(Cost)로 생각하여 保險은 이것을 除去하고 輕減시키는 構造라 하였다.³⁾ 그에 依하면 危險은 損害發生의 可能性이라고 解釋되지만, 이러한 危險의 存在는 그것이 現實의 損害의 發

1) 小島昌太郎 總會保險學 p. 322, 334

2) Rigel, R. Insurance, principles and practices, 1937, p. 27

3) Mowbray, A.H., Insurance, its theory and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1937, p. 2

生與否에不拘하고 社會的 負擔인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이 危險에 따른 社會的 負擔을 除去·輕減하고 社會의 利益을 도모 하는 方策이 必要하지만 그것이 保險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損害의 發生, 卽 危險이 保險成立의 基礎라는 見解에 있어서는 앞의 「리겔」과 같다고 할 수 있다.

獨逸 保險學界에서 支配的 地位를 占한 「마네스」(Manes)에 依하면, 保險은 多數의 同一한 事情에 놓여있는 經濟主體의 사이에 偶發的인 金錢의 欲求를 相互的으로 充足하는 것이다. 그에 依하면 相互의 充足性이라는 데에 重點을 두었지만 그의 本質的考察에 따르면 危險의 概念에서 完全히 脫皮 못 하았다고 볼 수 있다. 또 그에 依하면 前述의 金錢의 欲求는 極히 넓게 解決되고 있다. 卽, 그것은 直接의 損害, 利益의 喪失, 當面의 損害防止를 爲한 支出, 다른 支出의 必要 等を 問題로 하고, 그것들이 欲求充足에 대해서 當事者에 依하여 어떤 金額으로 調達되는 것이다. 換言한다면 그에 따르면 充足할 수 있는 欲求는 金錢的으로 評價되는 것이 必要한 것이다. 前述한 經濟主體가 當面하는 欲求는 그에 依하면 종종 危險이라고 말하지만 그 危險과 같이 또 損害가 問題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危險과 損害와의 概念은 말할 必要도 없이 保險 特有的 性質을 갖고 있지만 「마네스」에 依하면 危險이란 通常, 消耗過程으로 나타나는 偶然事件, 卽 保險事件의 可能性을 指稱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損害라는 것은, 그 事件 自体를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事件은 그가 解釋하는 바는 決코 災厄만은 아니다. 例하면 所期의 年齡까지의 生存·子女의 結婚·出產 그 他의 慶事도 여기에 屬하여 이러한 事件이 財產의 消耗를 必要로 하고 生業의 障害를 가져온다는 點에 問題가 되는 것이다.

「마네스」는 保險의 本質을 相互의 充足에서 求하고 있지만 그 充足할 수 있는 것은 損害 또는 危險의 概念에서 離脫 할 수는 없다. 그의 用語에 있어서의 危險은 Risiko와 Gefahr로 區分되어 前者는 단지 發生의 可能性을 意味하는 點에서 「모부레」의 用語와 같지만 後者는 그 可能性이 明確히 損害와 結付되어 있다. 元來, 그는 後者의 危險에 대해서는 蓄積保險에 있어서의 保險事件도 여기에 包含됨을 明白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 事件을 不利益한 것으로 하고, 또 그것이 消耗過程에 있어서 發生한다고 본 點에서 거기에 대한 欲求充足이 保險의 本質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부레마(Brämer, H.)에 依하면 保險은 偶然的인 損失에 直面한 個人의 財產에 대해서 그 달갑지 않는 結果의 被害를 적게 할려는 目的과 職能을 가지고 그 損失은 그러한 目的에서 構成된 團體에서 分擔된다.⁴⁾ 卽 그의 解釋에 따르면 保險은 損害를 줄 수 있는 事件을 防止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直面한 사람들에 대해 損害를 引受하여 그 損害를 團體에 있어서 分擔하는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부레마」는 明白히 損害의 分擔을 保險의 本質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損

4) Brämer, H.U.K., Das Versicherungswesen, 1894, s. 2

害의 概念에 대해서는 그는 그것을 廣義로 解釋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損害라는 概念은 保險에 있어서는, 通常의 用語보다는 좀 廣義로 解釋된다. 實質적으로는 損害는 없지만 船舶의 入港이 遲延된 경우도 여기에 包含된다. 또 生存을 保險事件으로 하는 終身年金이나 蓄積保險의 경우에도 損害는 存在하지 않지만 여기에 包含되는 것이다. 故로 前述의 危險概念의 規定은 一般的으로 狹意로 보지만 지금 이것을 넓힌다면 現實의 保險事業의 範圍를 不分明하게 한다는 것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保險의 本質은 그들에 있어서는 危險을 떠나서는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 이러한 危險은 損害와 結付되는 것이다. 특히 「부레마」는 損害만이 正面으로 取扱되어 危險의 概念은 表面化되어 있지 않으나, 그 裏面に 숨어있다고 생각된다.

即, 그가 損害의 分擔이 契約으로서 行하여짐을 明確히 하는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危險에 當面한 個人이 保險團體에 加入하여 그에 生길 수 있는 損失을 分擔하는데 대해서는 通常, 保險契約의 締結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한 點으로 봐서는 그가 말하는 危險은 損害 그 것이 적어도 그 發生의 可能性을 말한 것은 明白한 것이다.

保險의 本質과 危險 또는 損害와의 關連에 대해서는 或者是 이것을 動的으로 觀察해서 填補·分擔·欲求充足의 行爲 등으로 보고 或者是 이것을 靜的으로 觀察하여 組織이나 契約으로 생각한다는 差는 있지만 지금 그것을 究明할 必要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危險과 그것과 結付되는 損害가 學者들의 腦裡에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危險과 損害의 그 自體의 概念은 決코 同一한 것은 아니다. 元來 「危險」이란 말은 獨逸語로서는 Gefahr와 Risiko로 表現되어 그 意味도 學者에 따라 틀리지만 英語에서는 단지 risk로 表現된다.

「마네스」의 見解에 따르면 Gefahr는 直接的으로 사람의 欲求에 結付되어 있고 그것이 金鏡的으로 評價될 때 特히 Risiko로 나타난다.

即, 保險事件이 特히 財産의 消費를 必要로 하고 그것이 加入者에 있어서 生業의 障害가 된다고 하는 點에서 欲求의 Gefahr가 存在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러한 事件이 容觀化되어 換言하면 費用·損失 또는 損害 등으로 생각 할 때 그것들의 不確實性이 바로 Risiko로 불리우는 것이다.

헬만스톨과(Herrmannsdorfer, F.)는 이것과는 좀 다르다. 即 그에 依하면 Gefahr는 保險事件의 發生, 그것을 意味하고 그 保險事件이 損害에 結付되어 생각하는데에 Risiko는 一方에서는 損害가 생기는 保險의 客體를, 他方에서는 Gefahr의 程度를 各各 나타낸다고 하고 있다.

即 「헬만스톨과」에 依하면 Gefahr는 經濟的으로 不利한 事件이 保險에 付保된 Risiko의 위에 나타난 可能性이고 그 事件에 依하여 保險者에 있어서 保險金支拂의 責任이 생기는 것이다. 故로 Gefahr는 事件發生의 可能性인 것이다. 그러나 Risiko라는 말은 여러가지의 意味로 使用된다. 또 여기에서 注意할 것은 Risiko와 Gefahr는 때때로 同意語로 使用되는 것

이다. 예를 들면 「킷슈」(Kisch, W.)는 危險을 保險者가 履行하는 給付의 責任, 또는 그것을 履行하는 狀態, 또는 그 狀態가 生길 수 있는 可能性이라고 말하고 있다.

Risiko와 Gefahr는 同意語로 解釋된 것은 결코 적지 않다. 어느 것이나 그것들은 可能性이나 狀態라는 客觀的인 概念이지만 때로는 行爲의 冒險性이란 點에서 말하자면 主觀的인 意味를 갖는 Wagnis와도 混用되는 수가 있다.

英語의 risk에 關한 經濟學的의 考察에 대해서는 「위렐」(Willet)의 所說을 擧論하고 싶다. 卽 그에 따르면 偶然에는 主觀的인 것과 客觀的인 것이 있으나, 一般的인 用語는 後의 意味의 것이고, 그것은 어떤 事件의 將來에 있어서 蓋然發生率의 크기(degree of probability)를 뜻한다. 그러나 一方 事件發生의 不確定의 程度(degree of uncertainty)는 蓋然發生率에 應하여 增減하고 偶然이 均等인데 換言한다면 蓋然發生率이 2분의 1인데 最大가 되는 것이다.

「위렐」의 偶然의 問題는 上記의 蓋然發生率과 不確定에서 考察된다. 그러나 risk는 그가 그것의 引受의 報酬로 하는 保險料와의 關連에 있어서 問題가 된다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다. 그래서 그 경우 그는 risk를 蓋然發生率에 있어서 把握하는 通說을 排除하고 損失의 發生에 대한 不確定의 程度로 해서 이것을 考慮하고 그것에 主觀的인 不確定의 客觀的인 相關이나 災害發生의 客觀的인 不確定等의 呼稱을 준 것이다.

risk라는 말에 依해 表現된 危險의 概念은 元來부터 上記한 것 만이 아니다. 예를 들면 「마네스」는 그가 美國에서 最初로 英語로 된 著書「Insurance, facts and problems, 1938」에서 risk를 average figure of possible needs라고 하고 危險度(measure of danger)라고 말해도 지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risk는 抽象的인 具體的인 두가지의 意義에 쓰이지만 上記의 概念은 前者에 屬하는 것이라고 解釋되어 그가 risk를 特히 danger의 概念에 結付시키는 點에서는 앞에 獨語의 用法으로 Risiko와 Gefahr의 두가지의 表現이 使用된 것과 共通한 點이 認定된다.

危險의 概念에 대해서 前述한 것 들은 少數의 事例에 不過하다. 그러나 이것에 따라서도 우리는 危險概念의 表現이 결코 一致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또 危險은 때로는 保險의 客体라는 意味로도 解決된다. 그러나 그것은 大部分 Risiko나 risk의 表現으로 보는 것이다. 例하면 「마네스」의 上記 著書에서는 具體的인 意味에서의 risk는 人 또는 物을 指摘하고 그 危險이 保險加入의 原因인 偶發事件에 依해 損傷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危險에 關한 最近의 學說으로써 特히 페푸어(pfeffer, I.)가 注目된다. 그의 保險本質論은 危險과 不確實性을 明白히 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그 경우 危險은 偶然事件으로 그것은 確率에 依해 測定되고 그 一方 不確實性은 確信의 程度에 따라 測定된다. 卽 危險은 客觀的인 狀態, 不確實性은 主觀的인 狀態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不確實性·確率·危險 또는 確信의 程度等을 區別하는 것은 一貫된 保險理論을 爲해 必要하다는 것이 그의 思考方式이다.

「페푸어」에 따르면 保險은 危險移轉(transfer of risk)의 構造이지만 그 構造는 同時에

技術이고 또 原理인 것이다. 그 目的은 被保險者에 있어서 不確實性的 輕減에 있고 그 手段
만이 이러한 特殊한 危險의 移轉에 不過한 것이 되는 것이다.

Ⅱ 契約에 있어서의 危險

元來 保險契約은 保險의 構造를 保險企業과 加入者와의 結付로써 이것을 個個로 考察하
는 것이다. 法律的 考察에 있어서 保險은 當事者의 一方인 保險者가 一定의 保險事件의 發
生에 따라 保險金을 給付하고 그 相對方인 契約者가 報酬를 주는 契約인 것이다. 그래서 이
러한 保險者의 給付는 때때로 偶然事件에 依해 發生하는 損害의 填補라고 생각한다. 이 경
우 危險이라면 이 偶然事件 그것을 말하고 또 損害가 發生할 수 있는 可能性을 意味하기도
한다. 後의 意味에서의 危險은 그것이 具體化될 때 損害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損害의 填補 또는 危險의 引受라는 것이 保險의 本質이 된 點에서는 法律的 解釋은 어느 것
이나 共通된 것이다.

商法의 規定에서는 損害保險과 生命保險으로 區別되어 前者에서는 이것을 損害 填補의
契約으로 하고 있지만, 後者에 있어서는 이것을 金錢給付의 契約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規定만을 考察한다면 生命保險에는 損害의 發生을 必要로 하지 않기 때문에 危險
은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故로 損害없이, 危險없는 때에는 保險이 成立할 수 없다는 見解
라면은 生命保險은 損害가 없는데 危險을 負擔하기 때문에 이것은 賭博이라 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解釋에 대해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即 하나는 生命保險은
本質적으로 保險이 아니라는 것과, 또 하나는 生命保險도 一般的으로 保險으로 불리어 그것
이 커다란 產業으로서 成立하고 있다는 社會의 事實에서 본다면 이것도 損害나 危險의 概念
에서 說明하려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法律的 解釋은 大體로 後者에 屬한다고 생각된다.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 生命保險은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고 平均적으로 考察한다면 그것은
損害填補의 意味를 갖인다고 할 수 있다. 保險은 扶養能力者의 不時的 死亡으로 생기는 危
險, 또는 生活保持의 手段을 못 갖는 老後의 生活의 危險에 대해서 行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生命保險이 損害의 填補 以外の 目的에 現實적으로 利用되고 있다는 事
實은 否定할 수 없는 것이다. 即 이 경우 一定 金額의 給付를 받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
으로 保險事件이 損害를 안 입혀도 加入者는 단지 經濟上의 負擔을 輕減하는데 不過한 것이
다.

法律的 考察에 있어서는 이것을 마치 違約金처럼 豫想的 損害를 填補한다고 解釋하는 것이
다. 換言한다면 生命保險은 加入者에 있어서 損害의 填補를 目的으로 안하는 點에서 損害保
險과 相違하지만 損害 그 自体는 如前히 豫想할 수 있는 것이다.

生命保險에 있어서의 所謂 豫想的 損害와 損害保險에서의 現實의 損害와의 사이에 差違가

있다는 것도 損害를 갖이고 保險成立의 基礎로 하는 限 一段은 生命保險에도 危險은 存在하는 것이다.

生命保險에도 被保險利益이 있다고 본다면 當然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損害라는 것은 이 法律的解釋에 따르면 偶然事件, 即 保險事件에 따라 생긴다는 것을 必要로 한다. 이 保險事件은 加入者가 그 發生을 希望하던 안하던 相關이 없다. 이 偶然事件이 損害發生의 可能性을 意味한다는 點에서 「危險」이라 불리우는 것이다.

이러한 解釋에 依하면 生命保險에 있어서는 保險事件은 元來 現實의 損害가 아니고 豫想的 損害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豫想的損害라는 것은 損害의 豫想이라고는 할 수 없다. 損害의 豫想이라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이 將來 實質的으로 價値의 減滅이 生길 수 있는 可能性을 推定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推定이라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損害가 發生 안하는 限 危險의 存在는 認定할 수가 없다.

保險은 어디까지나 損害의 填補에 結付시켜 생각하는 限 生命保險은 保險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生命保險에 있어서 豫想的損害라고 불리우는 것은 現實의 損害와 같이 損害의 一種이고 이 損害의 發生에 대해서 危險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問題는 損害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點에까지 考察해야 할 것이다.

損害의 發生에 對한 加入者의 態度는 生命保險과 損害保險과는 根本的으로 틀리는 것이다. 損害保險에 있어서 加入者는 將來에 損害의 發生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認定하지만 그 는 이것을 希望하는 것은 아니고 萬一 그 損害가 發生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填補를 받음으로 그의 經濟生活를 確保하는 目的下에 保險契約를 締結하는 것이다.

生命保險에 있어서 死亡을 損害로 본다면 이 것과 同一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死亡이라는 것을 認定하지만 이것을 希望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所謂 蓄資 保險에 있어서는 加入者의 態度는 全然 다르다.

即 어떤 年令에의 到達을 損害로 본다면 그의 希望은 損害의 發生 그것이다. 이와같이 保險이 損害의 填補를 職能으로 하는 것이지만 어떤 種類의 保險에서는 損害의 發生을 希望안 하고 다른 保險에서는 이것을 希望한다는 대단히 奇妙한 現象이 나타나는 것이다. 保險에 있어서의 損害는 偶然事件, 即 保險事件에 따라 發生하는 것이지만 保險事件의 發生은 반듯이 損害의 發生을 갖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點은 前述한 「마네스」의 指摘에서도 明白한 것이다.

保險의 法律的解釋은 이 點에서 不明確하다기 보다 오히려 歪曲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即 이 解釋에 따르면 損害는 保險成立의 基礎이고 危險은 損害로서 具體化되기 以前의 狀態인 것이다. 이와 같이 損害와 危險과 保險事件과의 三者는 不可分의 것으로 表裏의 關係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保險의 法律的考察과 前述한바 있는 經濟學的考察과는 그 實資에 있어서 同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이 保險의 本資에 關한 經濟學的解釋이나 法律的解釋이나를 不門하고 그 說明의 根據를 加入者側에 求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保險의 經濟學的考察에서나 法律的考察에 있어서도 危險을 保險事件의 發生 그 自体 또는 그 發生의 可能性으로 보는 點에서 相違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危險이 具體化 되었을 경우 그것이 損害라고 불리우는 點에 問題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事件이 保險企業에서는 保險金支拂의 義務가 생긴다는 事件이라는 데에 注意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危險의 概念은 加入者側에서 벗어나 保險企業側에 옮겨지는 것이다. 危險을 이 點에서 保險企業側에서 保險事件에 대해 求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偶然事件만을 必要로 하지 않을 것이다. 例하면 確定日拂保險에 있어서는 保險事件은 被保險者인 子女의 第몇回의 生日의 到達이지 그 子女의 生存與否는 問題가 안된다. 이러한 保險은 이것을 保險企業側에서 본다던 確定되어 있는 日字에 이르러 一定額의 保險金を 支拂한다는 契約을 履行하는 것이다.

故로 이러한 경우에는 保險企業에 있어서 危險의 發生에 대해서는 偶然的의 要素는 存在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損害保險은 保險者가 加入者에서 發生하는 偶然事件 即 保險事件에 依한 損害를 填補하는 契約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偶然事件이라 함을 그것이 發生하느냐 안하느냐가 不確定인 것을 必要치 않고 단지 언제 發生하느냐가 不確定으로써 充分하다고 解釋되고 있다. 말하자면 이 不確定성은 契約에 當하여 客觀적으로 觀察될 것이고 임의 發生하고 있는 事件 또는 發生 안 한다고 確定되어 있는 事件에 대해서는 保險은 있을 수 없게 된다.

生命保險에서는 保險者가 被保險者의 生死에 關해서 一定의 金額을 支拂하는 契約으로 規定되어 있다. 여기에서 被保險者의 生死에 關한다는 것은 반드시 被保險者의 生存 또는 死亡이라는 事件發生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生死에 不拘하고 一定의 期日에 이르렀을 경우도 여기에 包含된다고 解釋해야 할 것이다. 生死를 不問하고 이러한 保險事件의 發生에 따라 保險金이 支拂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던 保險事件은 偶然事件인 것도 있고 또는 必然事件인 것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損害를 갖어오느냐 아니냐도 問題가 안된다.

이러한 保險事件發生의 可能性은 거기에 따라 保險企業에 있어서 保險金を 支拂하는 責任이 實現된다는 點에서 나는 이것을 危險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라 생각된다.

故로 危險은 保險企業에 있어서 保險金支拂의 可能性을 意味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危險의 概念을 保險企業側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여기에 危險을 保險企業側에서 본다는 것은 實은 保險關係를 全体로 해서 하나의 機構으로써 考察한다는 意味인데에 깊이 注意할 일이라 본다.

保險은 資金이 保險料와 保險金으로서 交流되는 機構인 것이다. 이 機構는 말할 必要없이 多數의 加入者에 依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은 어떤 種類의 保險事件의 發生을 條件으로 해서 保險金を 受取한다는 目的下의 一定의 保險料를 拂込하여 이 機構에 加入한다. 故로 保險의

本質은 保險企業과 加入者와의 兩面에서 이것을 考察할 수 있는 것이다.

換言하면 保險企業과 加入者와의 對立으로 나타나는 個個의 關係만을 取扱하려는 意味는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經濟學的考察의 立場에 서야 할 것이다. 卽 保險은 資金交流의 機構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保險에 있어서 이러한 機構는 單只 抽象的 關係로서가 아니라 具體的인 事業으로 運營되는 것이다. 保險을 經濟現象으로 捕捉하려면은 우선 이런 事業에 留意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經濟學的考察이고 또 保險學의 內容이라 할 수 있다.

이 運營의 擔當者가 保險企業이지만 이 企業은 이 機構에 있어서 多數의 加入者로부터 拂込된 保險料를 集積하여 이것을 保險事件의 發生에 따라 再次 保險金으로서 加入者에게 支拂하는 操作을 反復하는 것이다.

故로 保險의 經濟學的考察은 保險企業이 그 運營을 遂行하는 過程에 있어서의 現象을 資金交流의 狀態로서 取扱하는 것을 意味한다. 이렇게 해서 保險의 本質을 그 機構에서 求한다는 것은 實地는 그 保險企業의 性格을 明白히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保險企業에 있어서 이 保險金 支拂의 可能性이 危險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保險金 支拂은 이것을 保險企業測에서 본다면 明白히 支出인 것이다. 거기에 대해 保險料의 拂込은 收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支出과 收入이 特殊한 意味下에 各己 費用과 收益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保險企業은 이 收支인 資金交流의 操作을 反復함으로써 全體로서의 保險機構를 維持한다. 故로 먼저 保險金 支拂의 可能性으로 생각한 危險은 保險企業에 있어서 는 支出의 可能性으로 理解되는 것이다.

IV 經營에 있어서의 危險

企業은 收支의 主体인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볼때 그것은 利潤의 歸屬主体인 것이다. 그래서 이 企業利潤은 거기에서의 收益과 費用과의 差額으로 나타난다. 保險事業도 企業으로써 行해지는 限 이러한 點은 마찬가지이다.

이 事業이 어떤 公共性을 갖고 그 點에서 企業利潤에 制限을 받는 경우 더욱 公共團體가 保險企業이 될 경우에도 本質的으로는 差異가 없다. 이러한 收益과 費用과의 結付는 企業에 있어서 언제나 豫定의 比例에 놓여져 利潤의 安定이 保持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經營이 企業의 創意와 責任下에 이루어져 그것이 偶然事件에 當하는 結果인 것이고 여기에 企業危險의 概念이 成立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의 危險에 대해서 「라이트너」(Leitner, K.)은 企業이 豫見할 수 없는 또는 避할 수 없는 偶然事件의 結果 받는 直接·間接의 財産의 喪失로 하고 있다.⁵⁾

5) Leitner, F., Die Unternehmungsrisiken, Einzelwirtschaftliche Abhandlungen, Ht. 3, 1915, s. 7

이 때의 危險은 그에 있어서는 價値의 減少 또는 財産의 消耗에 依한 損失危險을 뜻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Risiko은 損失이나 費用으로 나타나는 潛在的인 Gefahr로 생각하는 것이다.

「레만」(Lehmann, M. R.)에 따르면 危險의 概念은 두가지의 意味로 말하고 있다. 卽 그 하나는 一般的으로 責任으로 불리우는 것 중 特히 經濟的인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一般的으로 蓋然發生率이라 불리우는 것 중 特히 消極的인 것을 말하고 있다.⁶⁾ 여기에 消極的이라는 것은 不美한 結果를 갖어오는 蓋然發生率이고 그것은 損害發生의 可能性에 不適當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企業危險의 概念에 關한 「라이트너」와 「레만」의 見解는 明白히 相違한 것이다.

卽, 前者가 具體的으로 財産의 喪失 그것을 말하는데 대해 後者는 損害發生의 可能性이란 抽象的인 狀態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兩者에 具體的인 것과 抽象的인 差異는 있지만 그 어느 것이나 損害의 概念에서 離脫하지 않는 點에서는 共通點이 認定되는 것이다.

「푸리온」(Prion, W.)에 依하면 危險은 企業目的의 不達成의 可能性으로 理解되고 있다. 卽 그에 依하면 企業에서 生産되는 財가 欲望의 滿足에 不適當하고 또는 販賣不能이 될 경우에는 消耗의 全部 또는 一部가 收益을 생기게 되고 또 勞働의 浪費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企業財産의 損失을 招來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危險이라는 것은 企業의 經營에서 생각하는 경우에는 投機에 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成果를 期待한다는 希望이지만 이것은 經營이 克服하려고 하는 經營固有의 樞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한다. 이러한 見解는 危險이 企業財産에 대한 損失을 意味한다는 點에서 如前히 損害의 概念에서 脫皮 못하지만 他方에 있어서 그것이 企業利潤의 成立에 結付시키는 點에서 그 意義를 認定할수 있는 것이다. 그에 依하면 危險의 形態나 크기는 元來 經營의 種類에 따라 틀리지만 여하튼 貨幣經濟下에서는 危險은 所定の 貨幣計算의 不達成이라는 點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計算은 所期의 價格이 實現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費用이 增大한다든지 어느 것에나 나타나 거기에 利潤의 減少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危險은 單只 利潤이 發生 안한다는 것 만이 아니고 또 費用의 回收가 實現 안된다는 것이다. 故로 損失이 생기는 경우 決定的으로 크게 된다는 것이다.⁷⁾ 「나이트」(Knight, F.)의 생각은 이러한 一般의 見解에서 본다면 危險의 經濟學 本質을 利潤發生의 原因이나 아니냐의 面에서 問題로 하는 點으로 極히 注目할 바이다. 卽 그에 따르면 危險은 數量的으로 測定이 可能한 것과 그것의 不可能한 것과 나누어지고 保險에 있어서 問題가 되는 危險은 前者이라고 하는 것이다.⁸⁾

이 點에서 그의 危險理論의 特異성을 發見할 수 있는 것으로 앞의 「푸리온」의 見解에 比

6) Lehmann, M.R. Allgemeine Betriebswirtschaftslehre, 1928. S. 212~4

7) Prion, W., Die Lehre Vom Wirtschaftsbetriebe, 1935, Bd. 2. s. 15

8) Knight, F., Risk, uncertainty and profit, 1929. p. 20

하여 一層 明確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見解를 더 살펴보기로 한다.

그에 依하면 우리들이 사는 世界는 變化의 世界이고 不確實의 世界인 것이다. 우리가 將來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極히 적은 것이다. 問題는 이 點에서 생기는 것이다. 企業의 經營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將來에 대한 不知에 대해서는 그 不確實性外에 一般적으로 危險(risk)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卽 將來에 대한 不知로서의 不確實性도 이것을 어떠한 方法으로 數量的으로 測定할 수 있는 경우에 特히 그것이 危險이라고 하는 것이다. 危險은 그에 있어서는 測定할 수 있는 不確實性이라는 것이다. 故로 企業은 그 經營에 있어서 將來 이러한 不確實性에 當面하고 損失에 直面하게 되는 것이다. 損失은 그것을 惹起하는 事件을 集團적으로 觀察함으로써 一定額의 費用에 轉換되어 勞賃·原料費等の 諸費用과 같이 消費者에 轉嫁되는 것이다.

「나이트」에 依하면 保險의 職能은 바로 이 點에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어느 建物이 火災를 當하느냐는 이것을 알 수가 없고 또 그 所有者는 火災에 따른 損害를 豫定할 수 없지만 保險이 이러한 사람들을 大數적으로 取扱하는데 따라 그 災害를 一定額의 費用으로 變化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將來의 不知라 해도 數量的으로 測定할 수 없는 不確實성은 費用이 될 수 없고 그것은 企業에서 利潤의 源泉이 되는 것이다. 利潤이라는 것은 企業에 있어서는 將來에 대한 判斷의 效果가 明確히 豫想할 수 없는 말하자면 多數의 事例를 蒐集 整理하여 거기에 必然性を 發見하는 充分한 組織을 缺한다는 그것부터 發生하는 것이다. 故로 이러한 變動의 世界에 있어서는 그 變動을 數量的으로 豫測할 수 없는 경우에 企業은 損失을 얻느냐 또는 利潤을 얻느냐가 되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 그 損失을 費用에 變化시킬 수 있는 것이다. 危險은 그에 있어서는 喪失에 關한 不知이고 不確實성은 利得에 關한 不知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이트」에 있어서는 危險과 不確實性과는 相互 區別되지만 그것은 實은 企業利潤의 源泉을 分明히 하기 爲한 것이었다. 卽 前述한 바와 같이 危險은 測定可能的 것과 不可能과 區分되어 前者에 있어서의 危險은 그것이 數量的測定이 可能하다는 點에서 본다면 既知의 것으로 이것을 除去하는 方法이 주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後者に 있어서의 危險은 測定不可能의 點에서 不可知의 것이고 이것을 除去할 수 없는 것이다.

前述한바 分明한것 처럼 「나이트」에 있어서는 危險과 不確實性과는 어느 것이나 損害의 概念에 結付되어 있다. 그에 依하면 危險에서 생기는 損害는 이것을 保險에 付保하는 限에서는 保險料의 形態를 取하는 費用으로 計上되는 것임으로 企業에 있어서는 利潤成立의 餘地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反해서 不確實性에서 생기는 損害는 미리 保險에 付保하지 않는 限 費用으로서의 計上은 不可能한 것이다. 이러한 考察은 利潤의 正當한 理論의 基礎를 形成하고 企業에 있어서 競争의 理論과 現實과의 사이에 생기는 것을 說明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이트」에 있어서는 前述한 測定可能이나 아니냐의 企業危險의 問題는 保險理論에서는 保險에의 加入이 可能하나 아니냐의 問題와 平行하는 것이다.

危險과 企業利潤과의 關聯에 대해서는 前述한 「위렐」(Willet)도 여기에 言及하고 있다.

即 그에 依하면 危險의 負擔이라는 것은 資本의 生産性を 增大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危險의 引受에 대해서는 報酬인 利潤이 獲得되는 것이다. 이 報酬는 將來의 損失을 填補하는 資金의 蓄積에 의하여 獲得되지만 그것은 또 危險의 程度가 크게 됨에 따라 커진다고 말하고 있다. 「위렐」에 있어서는 保險은 이러한 不確實한 損失의 填補를 위한 資金의 蓄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企業危險에 대한 알의 「나이트」나 「위렐」의 見解와 「하디」(Hardy, C.O.)를 말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危險은 費用·損失 또는 災厄에 關한 不確實性이라 한다. 即 그에 依하면 資本의 破壞 또는 喪失이 經營의 遂行에 있어서 確實하다면 그것은 이미 費用으로서 記帳된다. 이러한 경우 그것은 벌써 危險이 아닌 것이다. 이 破壞 또는 喪失이 不確實하다면 그것은 蓋然發生率의 判斷에 따라 處理가 되고 거기에 危險의 問題가 發生되는 것이다. 保險은 바로 그 除去의 方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⁹⁾

「하디」에 依하면 이러한 危險除去의 方法을 두가지로 大別하고 있다. 即 危險 그것의 排除(eliminate)와 危險의 轉嫁(transfer)인 것이다.

그러나 後者は 또 두가지로 區分된다. 即, 이것을 그 經營의 內部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이것을 特定의 것과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危險은 이 最後것에 包含되는 것이다.

第2의 方法에 따른 危險負擔은 그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職能과 經營이 分化되는 近代에 있어서는 가장 顯著한 현상이지만 지금 不確實性이 確實性에 代用(Substitution)된다면 이것에 따라 直接의 損失이 減少됨이 없이도 더욱 間接의 損害가 輕減된다는 結果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保險에서 取扱되는 것은 一般의 企業危險에 比해서 그 範圍가 極히 狹少하고 特히 두개의 條件을 必要로 한다. 即 危險이 多數 獨立적으로 存在하는 것과 事件發生의 蓋然發生率이 正確히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것 처럼 企業危險에 關한 「나이트」「위렐」「하디」의 사이에는 極히 비슷한 見解를 찾아 볼 수 있다. 即 그 第一은 危險이 어떠한 形態로 將來에 대한 不確實性에 關聯이 있다는 點과 第二는 危險이 費用인 性質을 갖는다는 點이고 第三은 危險 또는 不確實性이 언제나 損害의 概念과 結付되어 있다는 點이다. 그 중에서 第二의 危險이 費用이라는 點에 대해서는 이 三人의 學者는 모두 그것이 蓋然發生率의 理論의 適用에 基因된다고 한다. 實로 個別的觀察下에서는 偶然이라 볼 수 있는 諸現象도 이것을 多數全體로서 觀察할 때 어느 程度의 必然性이 發見된다는 것은 이미 大數法則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 故로 個個의 企業에 있어서 偶然성을 갖는 危險도 그것이 이러한 法則에 따라 考察되는 限 社會的으로는 必然성을 갖는 것으로 取扱되는 것이다.

9) Hardy, C.O., Risk and risk-bearing, 1931, P. 1

이러한 危險에 대해서 企業이 將來에 있어서 支出을 豫想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이와 같이 支出로서의 保險料를 拂込함에 따라 企業은 保險 關係를 생각하고 그 保險料가 그 企業에 있어서는 하나의 費用이 되는 것이다.

第一의 點 卽 危險과 不確實性의 關係에 대해서 「나이트」는 危險概念의 分析을 明確히 하고 그것이 企業利潤의 源泉이 된다는 것을 強調한 것이다.

이 點에서 三者중 그가 가장 特異한 것으로 注目되고 또 比較的 詳細히 紹介한 까닭이다. 이러한 「나이트」의 危險理論에 對立하여 이것을 修正的으로 展開한 것으로 「뮈달」(Myrdal, G.)을 말한 수 있다.¹⁰⁾

卽, 그에 依하면 企業은 그것이 實現하는 利益 또는 損失에 대해서 그 可能한 여러가지의 크기를 認定하고 거기에 있어서의 蓋然發生率을 생각한다.

企業은 그것이 現實로 經驗하는 危險을 客觀的으로 豫想하는 것이 되지만 여기에 그 危險이 企業에 있어서 어떠한 經濟的犧牲을 意味하느냐는 評價의 問題가 存在하는 것이다.

故로 「뮈달」에 있어서는 「나이트」가 말하는 危險의 保險可能이나 不可이냐의 問題는 단 지 程度의 차이이고 決코 絕對的인 것은 아니다.

「나이트」는 經濟的意味를 重視했기 때문에 危險과 不確定과를 區別하였지만 이 區別은 無意味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危險은 一般的으로 그것을 測定할 수 없지만 그 大小를 比較할 수 있다면 그 크기가 問題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意味에서 數量이 危險이다 라고 말한다. 以上과 같이 企業危險에 關한 代表的인 見解를 明白히 하였다.

이러한 見解는 元來 區區한 것으로 歸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危險이 企業의 經營에 있어서 달갑지 않은 일로서 그것이 어떠한 手段 特히 蓋然發生率에 따라 豫測할 수 있다는 點에서는 어느 것이나 共通點이 認定되는 것이다.

前記한 「페푸아」는 危險에 關한 이러한 問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즉 「나이트」의 本質的貢獻은 그가 危險·不確實性 等の 概念을 區別하고 利潤의 成立에 대해 說明한 것은 그 중 不確實性이라는 點을 明確히 한 點이다. 그러나 「페푸아」에 依하면 保險의 本質은 前述한 것 처럼 危險의 移轉 그것에 있지만 그 危險과 利潤成立과의 關係는 「나이트」의 그런것은 아니다.

「나이트」에 依한 保險은 結合으로서 危險을 處理하는 몇개의 方法 중의 하나로서 取扱되는 것이다. 故로 利潤이라는 題目에 包含되는 것은 아니다. 萬若 先天的인 또는 過去의 經驗의 數字에 따라 保險可能한 危險을 確實性에 轉化할 수 있다면 이때 利益을 얻는 것은 保險者이고 그래서 保險者는 그 自身 以外的 他的 生産諸要素中の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그가 保險을 分配過程에 있어서 別個의 要素는 아니고 오히려 各 生産要素의

10) Myrdal, G., Prösbildningsproblemet och Förändeligheten, 197. p. 100

所得의 一部를 構成하는 것이라고 考察하고 있다.

V. 危險과 費用

本來 企業이라는 것은 損益歸屬의 主体인 것이다. 말할 必要도 없이 企業이 實現하는 損益은 收益과 費用과의 差額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收益과 費用이라 함은 이것을 資本循環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貨幣의 收入과 支出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意味에 있어서는 企業은 「레만」(Lehmann)¹¹⁾ 이 말하는 收支單位인 것이다. 이런 것을 「리가」(Rieger, W.)는 經營의 過程은 단지 貨幣에의 再轉化로서 이것을 考察하는 것으로 또 技術的으로는 어떻게 틀리든 간에 貨幣에서 貨幣에의 再轉化에 企業의 共通性이 있다는 것이다.

企業에 있어서 이러한 收益과 費用이 언제나 豫定の 均衡下에 保持되어 그 結果로서 豫定の 利潤이 實現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均衡에 대한 偶然的 破壞는 企業으로서는 달갑지 않지만 이것을 免할 수는 없는 것이다. 企業의 經營이 이러한 일로부터 免할 수 없다는 것이 企業危險이라 불리우는 것이다.

「푸리온」이 危險을 價格과 費用과의 變動에서 考察한 것은 이러한 點에서 意味를 갖는 것이다. 많은 學者들이 말하는 것 처럼 그것이 損害이나 아니냐는 不問인 것이다.

故로 企業危險은 企業이 收益과 費用과의 偶然的 不均衡에 있게 된다는 意味가 된다. 이러한 것을 資本循環의 過程에서 볼 때 여러 學者가 말한 財産의 喪失·價値의 減少·經營價値關係에 대한 不意의 阻害·企業財産의 喪失로서 이것을 考察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不均衡을 收益보다는 오히려 費用測에서 考察할 때 企業危險은 費用發生의 問題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企業危險이라는 것은 企業이 現實的으로 이러한 不均衡에 直面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不均衡이 어떠한 方法으로 또는 어느 程度로서 豫測되는 것을 말하는데 不遇한 것이다. 이 方法이 所謂 大數法則의 適用을 意味하고 그 程度가 蓋然發生率로 나타나는 것은 이미 明白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收益과 費用과의 이 不均衡의인 企業危險에 대하여 個別的으로 具體的인 事實로서가 아니라 一般的인 抽象的 狀態로서 이것을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企業危險이 利潤或立의 基礎이나 아니냐는 問題가 아니다. 단지 그것이 豫測할 수 있는 것으로 企業이 이 危險을 갖는 結果를 償還하여 收益과 費用과의 사이에 豫定の均衡을 언제나 保持할만한 金額을 미리 計上할 수 있다는 點을 明白히 하면 된다. 이 金額은 이 企業이 保險關係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保險料의 形態를 取하는 費用이라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와 같이 해서 企業危險은 經營의 過程에 있어서는 費用인 性格을 갖는 것으로 理解되는 것이다.

11) Lehmann, A.A.O., s. 46-7.

危險이 保險에 付保되느냐 아니냐는 「나이트」의 考察은 이러한 點에 意味를 갖는 것이다. 個別的으로 또는 具體的으로는 偶然인 收支의 不均衡은 이것을 保險關係에 있어서 考察할 때 一般的으로 또는 抽象的으로 必然化시키지만 이러한 必然性에 따라서 企業은 그만큼 費用을 計上하는 것이다. 그것이 保險料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말해서 經營學的 意味에서는 保險은 價値充足을 될 수 있는 限 完全하게 하기 爲하여 個別經濟가 그 負擔할 수 있는 危險의 作用을 危險의 特殊화된 經營에 依하여 負擔할 수 있는 費用에 轉化시키는 것이라는 말이다.

費用으로서의 企業危險의 性格은 上述한 바 처럼 保險의 機構를 前提로 한 것이다. 즉 企業은 保險關係에 들어감으로써 그 收益과 費用과의 差감지 않은 不均衡에서 免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앞의 危險에 關한 몇개의 見解는 어디까지나 加入者의 立場을 考察하였다는 것에 무엇보다도 注意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선 危險이 費用이라는 點을 問題로하자. 保險의 機構에 있어서의 費用은 前述한 바와 같이 保險企業으로서의 資本循環中 第一의 系統에서는 保險金の 支拂, 第二의 系統에서는 保險의 勞務에 대한 支出에 不過한 것이다. 故로 危險의 問題도 이러한 두가지의 系統에 있어서의 費用에 대해서 考察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第一의 系統에 있어서는 收益과 費用과의 不均衡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被保險料는 그 의 算定이 道正한 以上 모두 支拂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保險의 本質은 이러한 資金交流의 機構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實에서는 이러한 資金의 交流는 責任準備金の 運用을 그 속에 包含하고 있다. 萬若 保險企業에 있어서 收益과 費用과의 사이에 不均衡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 責任準備金の 運用의 利潤成績에 由來한다. 이 危險은 直時 保險金の 支拂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保險料는 保險事件의 發生에 앞서 拂込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첫째의 系統에서는 危險의 發生은 保險金の 支拂속에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 根據는 責任準備金の 運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둘째의 系統에서는 收益과 費用과의 不均衡은 一般事業의 經營과 틀리는 것은 없다. 단지 이 경우에 保險에 있어서 資本循環이 一般의 그것과 틀려 收益이 始點으로 費用이 終點으로 各己 나타나는 것에 注意한다면 費用인 危險은 保險의 勞務속에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保險의 勞務는 첫째 系統의 資金交流를 現實化하는 操作이지만 그것은 미리 拂込된 附加 保險料에 依하여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保險에 있어서 企業危險은 첫째의 系統에서는 保險金の 支拂에, 둘째 系統에서는 保險의 勞務에 대한 支出에 이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危險이 費用이라는 性質에 起因한 結果인 것이다.

그러나 危險의 本質은 費用의 支拂 그것은 아니고 實은 그의 可能性을 意味하는 것이 分明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可能性이 現實로 費用의 支拂을 要하는 것은 收益과 費用과의 不均衡을 가져오는

偶然事件이 蓋然發生率에 따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

前述한 바와 같이 保險機構의 相對인 保險企業은 미리 拂込된 保險料의 集積속에서 保險事件의 發生을 條件으로 하여 保險料를 支拂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첫째의 系統을 말하여 費用發生의 可能性을 생각 할 때 企業危險은 保險企業이 保險金 支拂의 狀態에 있는 事實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保險企業은 이러한 危險下에 保險의 勞務를 提供한다. 故로 둘째의 系統에 있어서의 危險은 이러한 勞務가 어느 程度 크게 되느냐는 豫測에 이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保險의 本質을 資金交流의 機構로 考察하여 이것을 둘째의 系統下에 생각할 때 企業危險은 앞에 論述한 것이 된다. 첫째의 系統에 대해서 費用發生의 可能性은 保險事件에 따라 나타나지만 그것은 元來 收益과 費用과의 不均衡에 依한 것은 아니다. 故로 이 경우의 危險은 一般의 企業危險과는 틀려 特殊한 것으로 解釋되는 것이다. 이러한 危險이야 말로 保險의 本質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좀 強調的인 表現을 한다면 最初에 말한 保險의 鐵則과는 反對로 「保險없으면 危險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表現이 좀 지나친 것 같으나, 危險의 本質을 앞에와 같이 볼 때 決코 異常한 것은 없는 것이다.

여기에 反해서 둘째의 系統에 있어서는 費用發生의 可能性은 내가 말하는 保險의 勞務에 依해 나타나 그것은 언제나 收益과 費用과의 不均衡에 基因된다. 이러한 勞務는 具體적으로 保險料의 計算·徵收·保險金の 支拂·責任 準備金の 運用·設備 其他의 財産管理 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어느 것에나 企業危險이 숨어 있는 것이다.

故로 資本의 調達·生産·販賣·管理 등에 關한 企業 一般에 關한 危險은 이 경우에도 存在하는 것이다. 그러나 保險은 商品으로서의 性格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生産과 販賣에 關한 危險은 여기에서는 特殊한 形態를 取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注意할 것은 첫째의 系統에 있어서 保險事件의 蓋然發生率에 따라 나타나는 危險은 既知의 것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保險企業에 있어서 保險金の 支拂은 이 企業의 創意에 依해 만이 되는 給付는 아니다. 保險企業은 既知의 蓋然發生率下에 保險料와 保險金으로서 資金交流의 操作을 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保險機構는 언제나 말하는 것 처럼 元來 同種의 保險事件에 直面한 多數의 사람들에 依해 構成되기 까닭이다.

同一의 保險事件의 蓋然發生率이 危險의 測定の 基礎로서 이와 같이 保險金과 保險料와의 兩面に 나타난다는 것은 保險의 特殊機構에 由來한다. 保險機構에 있어서는 保險料와 保險金과는 全体로서 均衡의 關係에 놓여져 保險事件에 따라 일어난 保險金の 支拂은 모두 保險料의 受取에 따라 償還되는 것이다.

이것을 保險企業에서 본다면 保險料에 依해 形成된 資本이 그대로 保險金으로 分解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保險金の 支拂에 扞하는 保險料는 이 支拂의 條件이 되는 保險事件의 蓋然發生率에 따라 多數人에 依해 미리 拂込되는 것이다.

責任準備金の運用은 一般의 金融 또는 投資市場의 狀況에 따라 影響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外部의事情속에 企業이 어느 程度의 利潤을 豫定하느냐는 그 企業自体가 決定할 일이다. 이러한 利潤이 保險料에 拂込되는 것이다. 故로 保險機構에 있어서는 保險金支拂의 可能性인 危險이 保險事件의 蓋然發生率에 依據하여 그것이 企業의 創意外의 것으로는 되지만 現實에서는 運用利潤의 創意外가 여기에 加해져 이 危險에 대해 이것을 補償할 만한 保險料가 算定되는 것이다. 加入者인 企業에 있어서는 이러한 保險料가 費用으로 支拂되어 그것이 創意外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加入者인 企業에 있어서는 保險料의 形態로 생각되는 危險은 元來 保險企業에 依해 주어지는 것이다. 이 企業에 있어서는 保險에 加入하는 경우 危險은 保險料의 形態를 取하여 明確한 크기를 갖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이러한 保險料의 算定에 대해서는 保險企業의 創意外가 包含된다는 點에서 元來부터 保險企業相互間에 競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加入者인 企業의 危險은 또 이러한 競爭關係에 있어서는 具體적으로 限定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둘째의 系統으로 費用이라는 것은 保險의 勞務에 이것을 求할 수 있는 것이다. 이 費用은 具體적으로는 固定資産의 消耗과 또는 各種의 勞動이나 其他의 여러가지의 것에 해당되지만 그것이 保險企業의 創意外에 따라 變化하고 이러한 點이 더욱 커다란 競爭의 餘地가 있는 것은 말할 必要조차 없다. 保險의 勞務에 대한 이러한 費用은 附加保險料로서 加入者에게 分擔되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加入者인 企業에 있어서 危險은 그 創意外의 것으로서 保險企業의 創意外를 受取한 것이다.

Ⅵ. 結 論

經濟가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이것을 만드는 主体, 特히 企業이라 불리우는 것의 經營에서 이것을 考察할 때 明白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經營 그 自体를 問題로 하자는 意味는 아니다. 保險도 이러한 考察의 例外라고는 할 수 없다. 故로 保險에 있어서의 危險을 保險企業의 企業危險으로서 取扱한다는 것은 充分한 理由가 있다고 본다.

앞에서 「마네스」는 Gefahr와 Risiko를 用語上 區分하였다. 이 때에 그는 Risiko를 두고 經營上의 專門語로 하여 保險은 多數의 이 危險의 負擔者가 하나의 協同社會에 團結함으로써 可能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것은 그 自身の 積極的인 意圖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見解로서는 保險에 있어서의 危險이 經營學的으로 企業危險으로서 取扱되는 可能性을 暗示한 것으로 興味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 「마네스」의 見解는 保險에 있어서의 危險을 加入者인 企業의 立場에서만 論述하였다. 即 나가 말하는 收益과 費用과의 偶發의 不均衡이란 意味에서의 危險은 企業이 保險機構에 加入함으로써 이것을 脫皮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保險에 있어서의 危險의 一面을 理解할 수 있지만 그것은 決코 保險의 本質을 이룬다고는 볼 수 없다. 保險에 있어서의 危險이 保險金의 支拂속에서 求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危險이 保險企業에 있어서는 費用이라는 性格을 가진 點에서 본 結果이지만 오히려 保險金의 支拂 그 自体가 加入者인 企業에 있어서의 收益과 費用과의 不均衡을 償還하는 것이다. 故로 加入者인 企業에서 費用으로서 保險料의 形態인 危險이 立場을 바꾸어 保險業에서는 逆으로 保險金의 形態로 存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保險事業의 資本循環이 一般의 事業과 틀려 收益이 始點으로 費用이 終點에 나타난다는 特殊한 點이라는 點에 由來된다.

그러면 이 資本循環은 두가지의 系統下에 考察된다. 卽 保險金의 支拂이라는 것은 우선 保險의 本質인 純保險料에서 保險金에 이르는 資金의 交流와 다음으로 이 交流를 現實化시키는 附加保險料에서 保險의 勞務에 이르는 資金의 交流와의 不可分의 關係에 依해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故로 危險은 企業危險으로서 各己 두가지의 系統下에 이것을 考察해야 한다.

첫째의 系統에 있어서는 收益과 費用과의 不均衡은 本來 있을 수 없다. 그러나 保險料의 算定이 適正인 限에 있어서는 保險料와 保險金과는 全体로서는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어서 이 危險은 再次 保險에 付保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反해서 둘째의 系統에서는 가령 保險料의 算定이 適正하드래도 收益과 費用과의 不均衡은 本來 이것을 免할 수가 없는 것이다.

故로 保險의 勞務를 단르는 여러가지의 要素에 대한 危險은 理論적으로는 再次 保險에 付保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資本인 建物이나 什器等에 대한 火災保險, 勞動에 대한 生命保險이나 誠實保險 등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點에 있어서는 保險事業의 經營이라는 것이 一般事業과 틀리는 것은 없다.